

대학안전관리계획



2026. 2.

수성대학교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6
1. 재난	6
① 자연재난	6
② 사회재난	12
③ 세부 안전관리계획	14
2. 안전사고	17
① 대학 안전사고	17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25
③ 연구실사고	27
④ 세부 안전관리계획	29
3. 감염병 확산	39
① 감염병 재난	39
4. 범죄	45
① 일반범죄	45
② 성범죄	50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54
① 산업재해	54
② 중대재해	61
6. 기타	68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68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70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75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89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3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94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96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97

《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별도) 》

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2.8)
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3)
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9.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3)
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12)
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13. 제4차('22~' 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14.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여성가족부, 2023.1)
15.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17. 2023년 중대재해 예방계획(교육부, 2023.1)
18.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 (탑재) [학교안전지원시스템\(schoolsafe24.or.kr\)](http://schoolsafes24.or.kr) ⇒ 커뮤니티 ⇒ 교육부정책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비상사태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행정지원처)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재난,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의 분야별 집행계획 상 세부 업무는 담당부서에서 추진
- 세부집행계획을 작성 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 업무 추진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수성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15(만촌동)				
전 화	053-749-7000	FAX	053-751-1823	홈페이지	www.sc.ac.kr
총장	000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000(행정지원처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3,411	-	-	3,411	

교직원 (명)	직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기타	합계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2 조직체계 현황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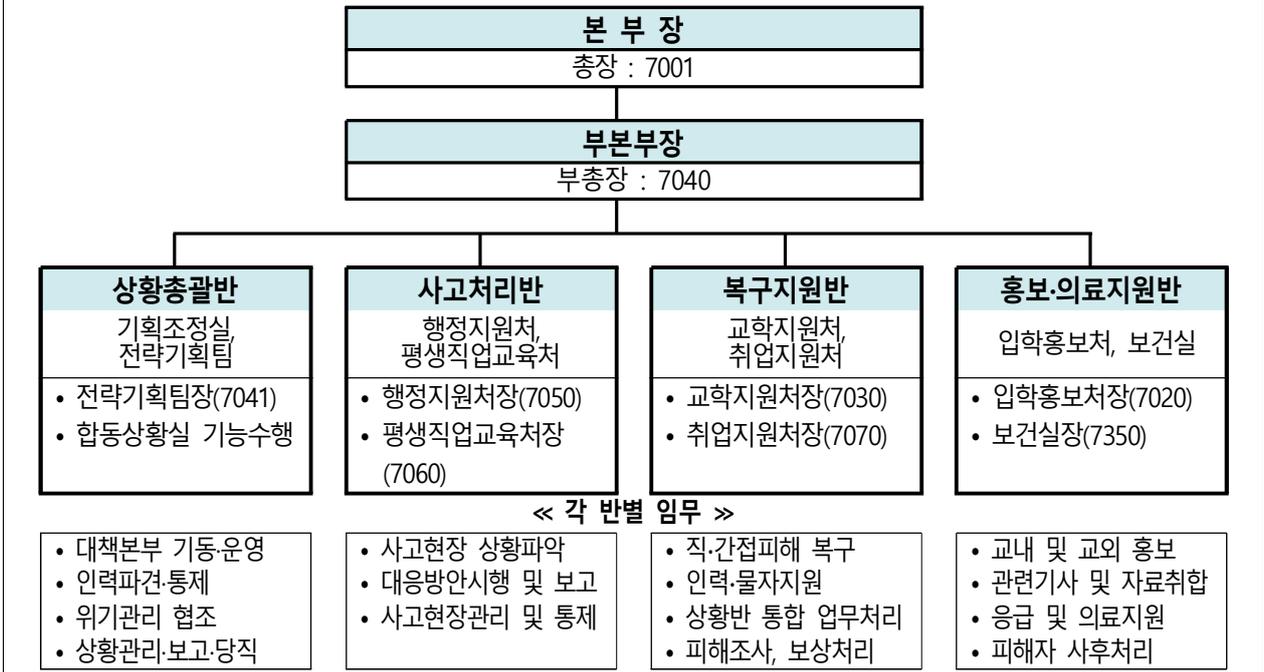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처	관계 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시설지원팀	학생장학팀/총무팀/교학지원팀
	사회재난	시설지원팀	학생장학팀/총무팀/교학지원팀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시설지원팀	학생장학팀/학생상담센터/ 총무팀/국제교류원/생활관
	교육시설안전	시설지원팀	학생장학팀/총무팀/교학지원팀
	연구실 사고	시설지원팀	학생장학팀/총무팀/교학지원팀
3. 감염병	코로나 19	학생장학팀	보건실/총무팀/교학지원팀
4. 범죄	성범죄	총무팀	학생장학팀/인권센터/학생 상담센터
	일반범죄	총무팀	학생장학팀/인권센터/학생 상담센터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총무팀	시설지원팀
	중대재해처벌법	총무팀	시설지원팀
6. 기타	비상사태	총무팀	시설지원팀/학생장학팀/교학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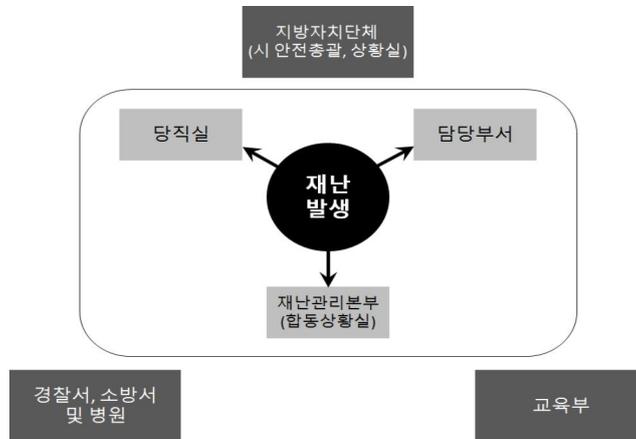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추가 연락처
총장실	총장	000	053-749-7004	7001
기획조정실	부총장	000	053-749-7040	7044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7056
교학지원처	처장	000	053-749-7030	7036
취업지원처	처장	000	053-749-7070	7072
입학홍보처	처장	000	053-749-7020	7024
평생직업교육처	처장	000	053-749-7060	7065
보건실	실장	000	053-749-7350	7095
본관 상황실	-	-	053-749-7493	7413
인권센터/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000	053-749-7445	7442 / 7443
산학협력단	단장	000	053-749-7010	7016
생활관(행복기숙사)	관장	000	053-749-7456	7451
대학(학과/부서)	대표번호	-	053-749-7000	-

○ 재난안전관리체계(재난관리본부)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 재난 심각단계 이전



○ 재난 심각단계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OOO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OOO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OOO	053-749-7055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OOO	053-749-7031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과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1	0	1	0	1	0.6
재산피해(백만원)	11	0	1.3	0	2.2	2.9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자체조사 결과

-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한파에 의한 동파 사고 발생으로, 한파에 대한 대비 강조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 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참고 자료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 (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영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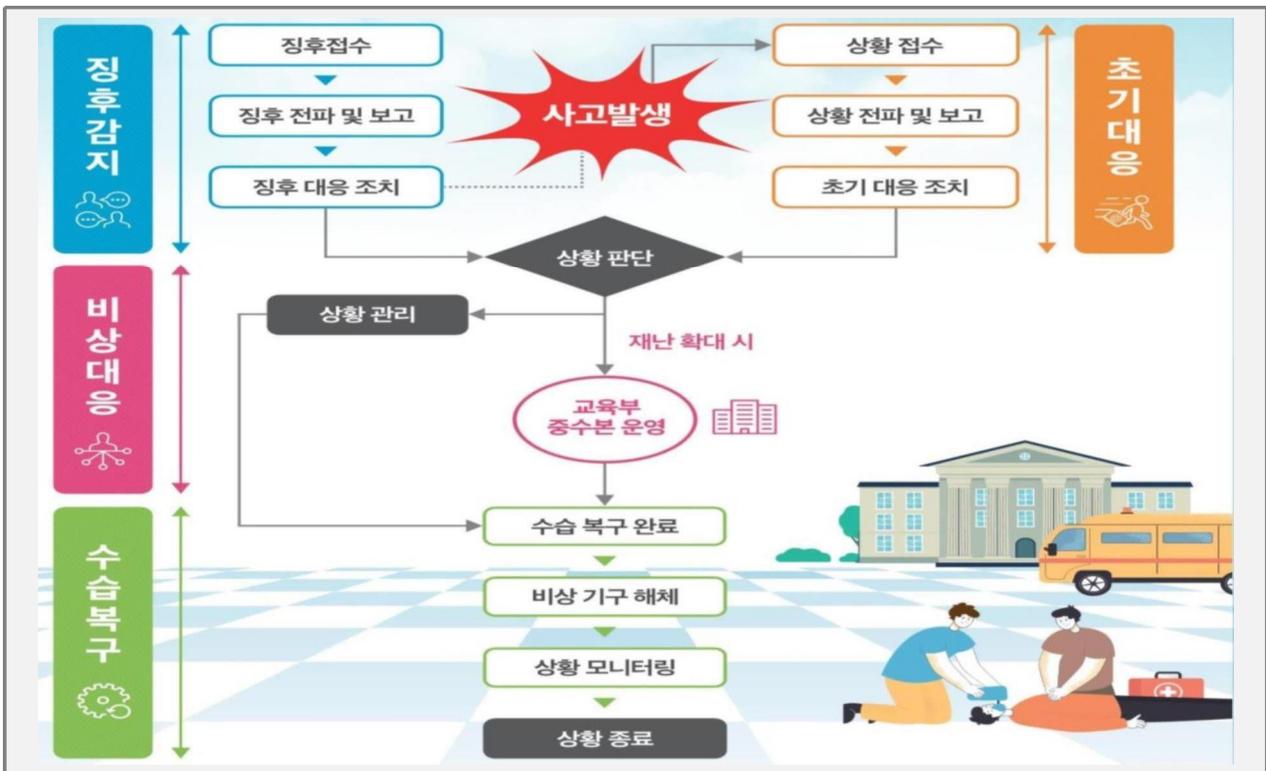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참고 자료 [공통자료]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4~제33조의3) 관련
-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7장 재난의 복구(제58조~제66조의3) 관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안전 시설물 보수	10	10	10	30	
조경수 유지관리	21	20	13	54	
안전교육 행사 운영비	0.8	1	1	2.8	
계	31.8	31	24	86.8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5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000	053-749-7031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피해	현황	없음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자체조사 결과

-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참고 자료

- [공통자료]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참조
- [공통자료]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참조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참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시설물 보수	72	72	72	216	
설비장비 관리	40	40	100	18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1	52.6	31.2	114.8	
소방시설 관리 용역비	18	18	20	56	
계	161	182.6	223.2	566.8	

3 세부 안전관리계획

《 재난 안전관리 》

○ 주요내용

분류	내용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 월별 안전관리 내용 및 체크리스트 업무연락을 통한 홍보 - 월별 실천과제 : 각종 훈련 및 계절별 재난 대비사항과 연계하여 실시
교육시설공제 가입	-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의 피해복구 및 배상책임 대책 마련 - 서류 및 전산기기물품 가입
자연재해 대비·대책 마련	-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정비 및 순찰 강화 - 집중호우 기간 대비 옥상 및 교내 배수로 점검 - 대설에 대비하여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주머니 확보
안전한국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 교육부 주관 안전한국훈련 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 - 학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 - 화재, 지진 등 재난 대비·대응 훈련
민방위 훈련 실시	- 정부 주관 민방위 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 - 학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 - 비상상황 및 화재대피훈련 등 민방위훈련 따라 훈련실시

○ 추진일정

분류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	→	→	→	→	→	→	→	→	→	
안전한국훈련					→					→			예정
교육시설공제 가입												→	
민방위훈련			→		→			→			→		예정

○ 월별 「 안전점검의 날」 실천과제

월별	주요 실천과제	비고
1월	- 난방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강화 - 에너지 절약 협조	
2월	- 난방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강화 - 에너지 절약 협조 - 설연휴 대비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안내	
3월	- 실험·실습실 안전교육 안내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이행사항 안내 -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	
4월	- 건조한 계절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예방 홍보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이행안내	
5월	- 건조한 계절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예방 홍보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이행안내 - 여름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6월	- 장마철 폭우 대비 시설물 배수시설물 안전점검 - 장마철 폭우 및 전기시설물 안전사용 홍보	
7월	- 장마철 폭우 및 전기시설물 안전사용 홍보 - 에너지 절약 협조 - 전기 시설물 안전진단	
8월	- 장마철 폭우 및 전기시설물 안전사용 홍보 - 에너지 절약 협조	
9월	- 실험·실습실 안전교육 안내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이행사항 안내	
10월	- 건조한 계절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예방 홍보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이행사항 안내 - 추석연휴 대비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안내	
11월	- 건조한 계절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예방 홍보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이행사항 안내	
12월	- 폭설·설해, 동파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 소방 안전관리 》

○ 주요내용

분류		내용
소방시설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 1년에 1회 이상 실시 사항(점검 용역 의뢰) - 결과 보고서 수성소방서에 제출
	월 점검	- 건물별 소방펌프, 방화셔터, 유도등 등 소방시설물 점검 - 소방시설점검업체에 점검 위탁 - 점검 후 미비사항에 대한 수리 및 보수
소방교육	자체 소방교육	- 화재주의 안내 -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안내
	소방관서 합동 소방훈련	- 관할 소방관서 합동 소방훈련 실시(년 1회 이상 실시) - 교·직원 및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실시 - 소방계획서상 본인임무 숙지 - 시나리오 작성(역할배정)하여 화재진압 및 대피훈련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방법 교육 및 실습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교육
사고대응	사전조치	-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실시 - 소방시설물 점검 및 보수
	사고발생	- 최초 발견자 경보기 작동 및 근처 소화기 사용 초기 진화 후 소방서 신고 - 대형화재 발생 시 대피안내등을 따라 대피
	사후조치	- 사고원인 조사 및 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 피해상황을 기초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복구비 신청

○ 추진일정

분류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월 점검	→	→	→	→	→	→	→	→	→	→	→	→		
소방교육			→							→				예정
직장자위소방대훈련					→									예정
기숙사대피훈련			→							→				예정

○ 소방 자체점검 내용

일정	점검내용	비고
매월	- 소화기 및 소화전 상태 점검 -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펌프, 연결수송관 점검 - 피난설비, 비상방송설비 점검 - 기타 소방시설물 외관 점검	월별 정기점검
6월	- 소방시설 종합점검(대학 내 소방시설물 일제점검)	하계방학
12월	- 소방시설 작동점검(대학 내 소방시설물 일제점검)	동계방학

※ 관련 매뉴얼 : 수성대학교 2026년 소방계획서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OOO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OOO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협조부서
센터장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OOO	053-749-7440	
팀장	총무팀	팀장	OOO	053-749-7055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OOO	053-749-7031	
원장	국제교류원	원장	OOO	053-749-7030	
사무실	생활관	관장	OOO	053-749-7456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OT, MT, 축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학생 행사시 사전에 안전교육 및 학생관리 매뉴얼이 필요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3	1	1	0	5	2
재산피해(백만원)	2.1	0.2	0.14	0	2	0.88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3	1	1	0	2
	계	3	1	1	0	2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자체조사 결과

- 대면 행사 증가로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 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참고 자료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딛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로서 학교가 주최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행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학생 집단활동 안전(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준수)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요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가장 가까운 출구, 모든 출구 위치 확인 필요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애+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보상

❖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범위	▶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 4년제 및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대상	▶ 약 6만명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

영향 범위	극심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극심 ▪ (상황) 정상적인 학교운영 중단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즉각적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대규모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중대 ▪ (상황) 학교운영에 전반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많은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경계	경계	심각	심각	심각	심각
중간 ▪ (상황) 학교운영의 중요 기능의 일시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계	경계	경계	경계	심각	심각
경미 ▪ (상황) 단순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 (규모)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주의	주의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사소 ▪ (상황)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또는) 교직원의 개입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관심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없음 ▪ (상황)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관심	주의	경계	경계	심각
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	없음	사소	경미	중간	중대	극심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음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영향 없음	응급처치 또는 통원치료 또는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손상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 또는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손상	입원치료 또는 트라우마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손상	사망, 영구장애 또는 사고 스트레스/트라우마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지원 필요

요인 1.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㉓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참고 자료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학생안전공제회비	7	7.5	7.5	22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OOO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OOO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OOO	053-749-7055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OOO	053-749-7031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피해	현황	없음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자체조사 결과

- 교내 시설 공사 혹은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의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철저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참고 자료

[공통자료]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참조

[공통자료]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참조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참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13	13.2	15.5	41.7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OOO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OOO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OOO	053-749-7055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OOO	053-749-7031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3	0	0	0	0	0.6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3	0	0	0	0.6
	계	3	0	0	0	0.6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자체조사 결과

- 피해현황 파악 결과 실습 중 부주의 및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부상 상황이 대부분으로 실습 시 유해인자에 대한 주의 및 보호구 착용이 필요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전파

※ 관련 매뉴얼 : 수성대학교 연구실 사고 대응 매뉴얼

참고 자료

- [공통자료]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참조
- [공통자료]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참조
-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참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연구활동종사자 공제가입	3	3	3	9	
연구실 정기점검	4.2	4.2	4.2	12.6	
연구활동종사자 검진	2.4	2.4	1	5.8	
방사선종사자 관리	13.5	14.2	14.2	41.9	
계	23.1	23.8	22.4	69.3	

4 세부 안전관리계획

《 건축 · 시설물 안전관리 》

○ 주요내용

- 교육시설 내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

연번	건물명	준공년도	연면적(m ²)	층수(상/하)	구조	비고
1	경복관	1996	10,361	(9/0)	RC	
2	신비관	1996	6,213	(7/1)	RC	
3	성요셉관	1996	8,470	(8/2)	RC	
4	본관	1999	7,523	(4/1)	RC	
5	리오바관	1999	6,276	(3/1)	RC	
6	강산관	1999	10,437	(7/2)	RC	
7	안나관	2003	9,010	(7/1)	RC	
8	성광타운301호	1995	75	(4/0)	RC	교직원사택
9	젬마관	2017	11,243	(9/0)	RC	
10	마티아관	2018	2,826	(3/0)	RC	강당
11	운동장관리동 16동	2018	84	(1/0)	조립식	

- 교육시설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

분류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정	시설지원팀장(김O미)	행정지원처장(박O화)
부	시설지원팀원(조O익)	시설지원팀장(김O미)

- 교육시설 안전점검

분류	시기	내용
정기안전점검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1단계) 조사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2단계) 시설지원팀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상태 육안점검 (3단계) 중점관리시설(A-C) 및 재난위험시설(D-E)로 분류 (4단계) 재난위험시설로 판단되는 대상은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5단계)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등급 산정 (6단계) 손상정도에 따라 보수 또는 보강 실시 (7단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수시(긴급) 안전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국가적 재난 및 자연 재난 등 발생 시)	

《 설비시설물 안전관리 》

○ 설비시설물

- 정기 안전점검 현황

분류	대상	내용
가스 시설물	대학 내 도시가스 사용시설 (정압기, 식당 및 실습실 등)	- 정기적으로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 실시 후 문제점 보강
전기 시설물	대학 내 누전차단기, 개폐기 점검, 접지 및 절연저항 측정 등	

○ 승강기 안전관리

- 승강기 현황

분류	대수	정기검사 기간	비고
본관	1대	12월	오티스
리오바관	1대		현대
안나관	2대		현대
성요셉관	1대		현대
경복관	1대		오티스
강산관	1대		현대
	1대	8월	현대
젼마관	2대		오티스
마티아관	1대		오티스

- 휠체어 리프트 현황

분류	대수	정기검사 기간	비고
성요셉관	1대	8월	신일승강기
경복관	1대		
강산관	1대		

※ 월 1회 이상 점검 / 년 1회 정기검사 실시

※ 긴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센터

(현대: 1577-0603 / 오티스: 1661-6112 / 신일승강기: 010-3507-0060)

《 석면 안전관리 》

○ 주요내용

- 대학 내 석면 건축물 현황

연번	건물명	연면적(m ²)	석면함유면적(m ²)	비고
1	경복관	10,361.52	750	
2	신비관	6,213.88	2,001	
3	성요셉관	8,470.72	1,818	
4	본관	7,523.34	4,526	
5	리오바관	6,276.52	1,457	
6	강산관	10,439.16	97.98	
7	안나관	9,010.28	7,220	
합계		58,295.42	17,869.98	

- 대학 석면시설 안전관리인 지정 · 관리

성명	소속/직위	지정일	비고
조O익	시설지원팀/팀원	2021.11.04.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환경부 고시 2012-81, 82호 준수사항

1	석면함유자재 손상 시 즉시 보수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
2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을 정기점검하고,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 - 석면건축물 정기점검: 매년 6월 및 12월경에 실시
3	석면함유자재를 임의로 철거 또는 훼손 금지 -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

《 폐기물(폐수) 안전관리 》

○ 주요내용

- 폐기물 배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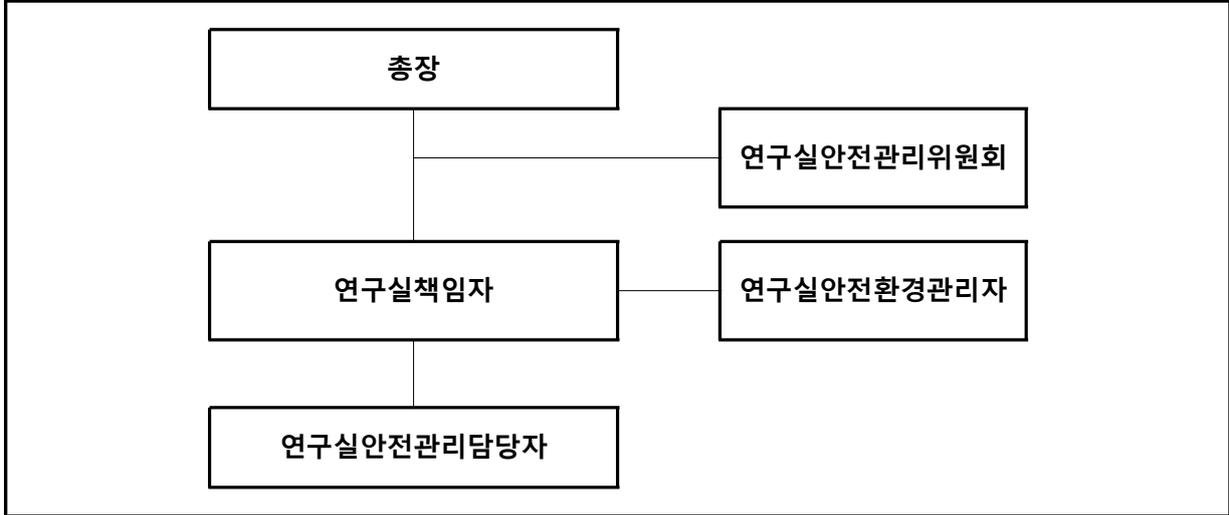
분류		배출처	비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연간계약으로 위탁처리
의료폐기물 (일반, 손상성 등)		간호학과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위탁처리
		반려동물보건과	
		치위생과	
		보건실	
폐수	실습폐수	안경광학과	학과에서 배출요청 시 위탁처리
		치기공과	
		치위생과	
	현상·정착폐수	치위생과	
	폐시약	화학물질 사용 학과	
음식물류폐기물		호텔조리과	연간계약으로 위탁처리
		제과제빵커피과	

- 배출처(학과/보건실)에서 배출 및 수거 내역 대장 작성
- 시설지원팀으로 월말 배출실적 보고

《 연구실 안전관리 》

○ 주요내용

- 연구실안전관리 조직체계(역할별 임무 규정 참조)



- 안전환경조직 분야별 구성

소속	담당업무	성명	비고
시설지원팀	총괄(팀장)	김O미	- 총괄
	연구실 안전관리	김O열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전담)
	연구실 기자재	윤O경	- 실험·실습 기자재
	기계설비	배O호	- 보일러/냉동기/가스
	전기설비	김O훈	- 전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겸임)
	건축·소방	조O익	- 건축/소방

- 주요 실시내용

분류	내용	비고
연구실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법 제14조에 의거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 -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 -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치 - 안전진단 용역업체를 통하여 실시 	안전관리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연구활동 시작 전 1회 이상 실시 - 안전관리담당자가 해당 실험·실습실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 작성 및 연구실책임자 확인 	학과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 근로자의 경우 유해인자 취급학과는 8시간 이상 그 외의 학과는 4시간 이상 교육 	안전관리부서 및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반기별 6시간 또는 4시간 이상 수료 	안전관리부서 및 학과

		-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습과 관련된 안전교육 실시 - 학과에 학기별 안전교육 계획 수립 협조	
	정보제공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하여 사고사례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사항 전파	안전관리부서
사고대응	사전조치	-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및 실험·실습 시 적절한 보호구 비치 - 사고발생대응매뉴얼 비치 및 교육	안전관리부서
	사고발생	- 사고 발생 시 연구실사고발생매뉴얼에 따른 조치 - 안전담당부서 및 소방서 등에 신고	안전관리부서 및 학과
	사후조치	- 사고원인 조사 및 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 사고발생원인 피해상황을 기초로 한국교육시 설안전원에 복구비 신청	안전관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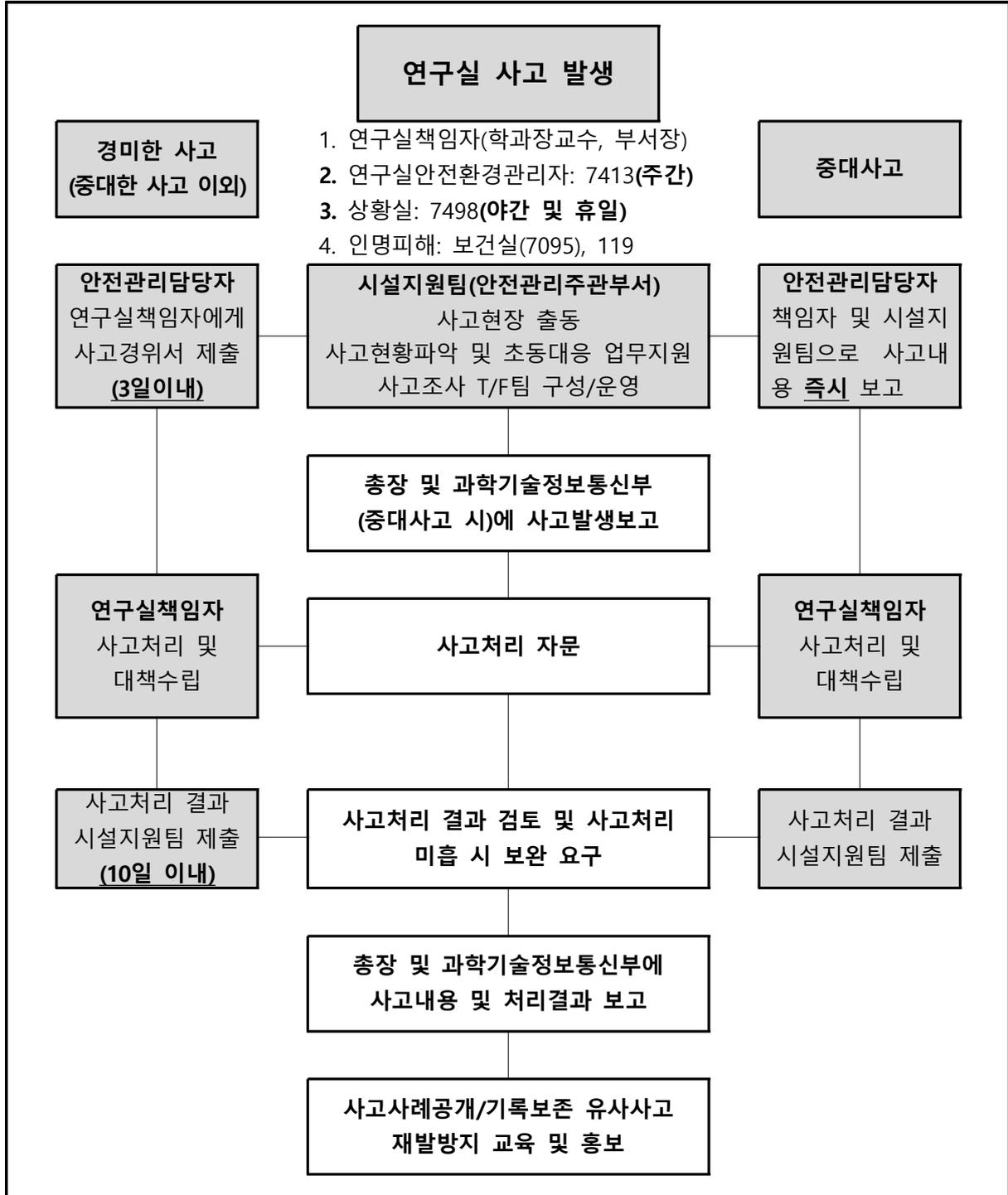
○ 추진일정

분류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기(정밀)안전점검								→						예정
일상점검	→	→	→	→	→	→	→	→	→	→	→	→	→	
신규교육			→											
정기교육			→	→	→	→			→	→	→	→		
정보제공	→	→	→	→	→	→	→	→	→	→	→	→	→	

< 연구실 사고 보고체계 >

분류	내용	비고
중대사고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후 병원, 소방서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3-202-4852)에 즉시 보고 - 보고 후 1개월 이내 사고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일반사고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신고 -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 사고조사표 작성 및 제출	-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연구실 사고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 방사선 안전관리 》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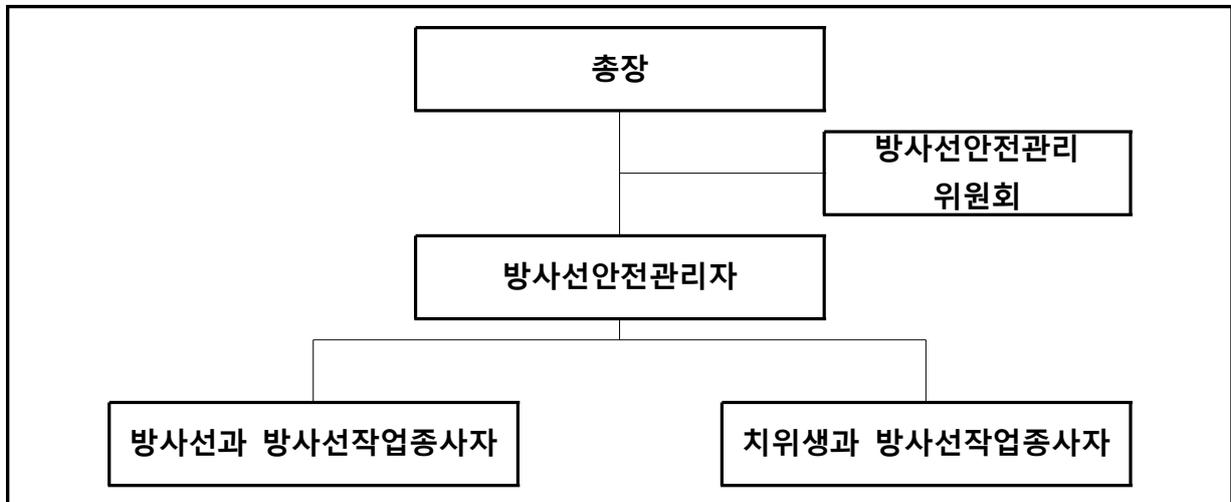
- 방사선발생장치 현황

분류	장소	용량	비고	
방사선과	젬마관 의료영상센터 (301호)	골밀도실습실	76kVp 10mA	
		의료영상실습실1	125kVp 500mA	
			150kVp 640mA	
		의료영상실습실2	125kVp 500mA	
		투시실습실	125kVp 500mA	
		유방검사실습실	40kVp 200mA	
	CT실	130kVp 225mA		
치위생과	젬마관 구강영상실습실 (807호)	일반촬영실1	65kVp 5mA	
		일반촬영실2	60kVp 10mA	
		일반촬영실3	60kVp 10mA	
		파노라마촬영실	90kVp 10mA	
			65kVp 3mA	

-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소속	성명	비고
방사선과	장○철	교원
	천○리	교원
	방사선과 재학생	재학생
치위생과	장○연	교원
	김○연	교원
	치위생과 재학생	재학생
시설지원팀	김○열	직원

-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체계



- 주요 실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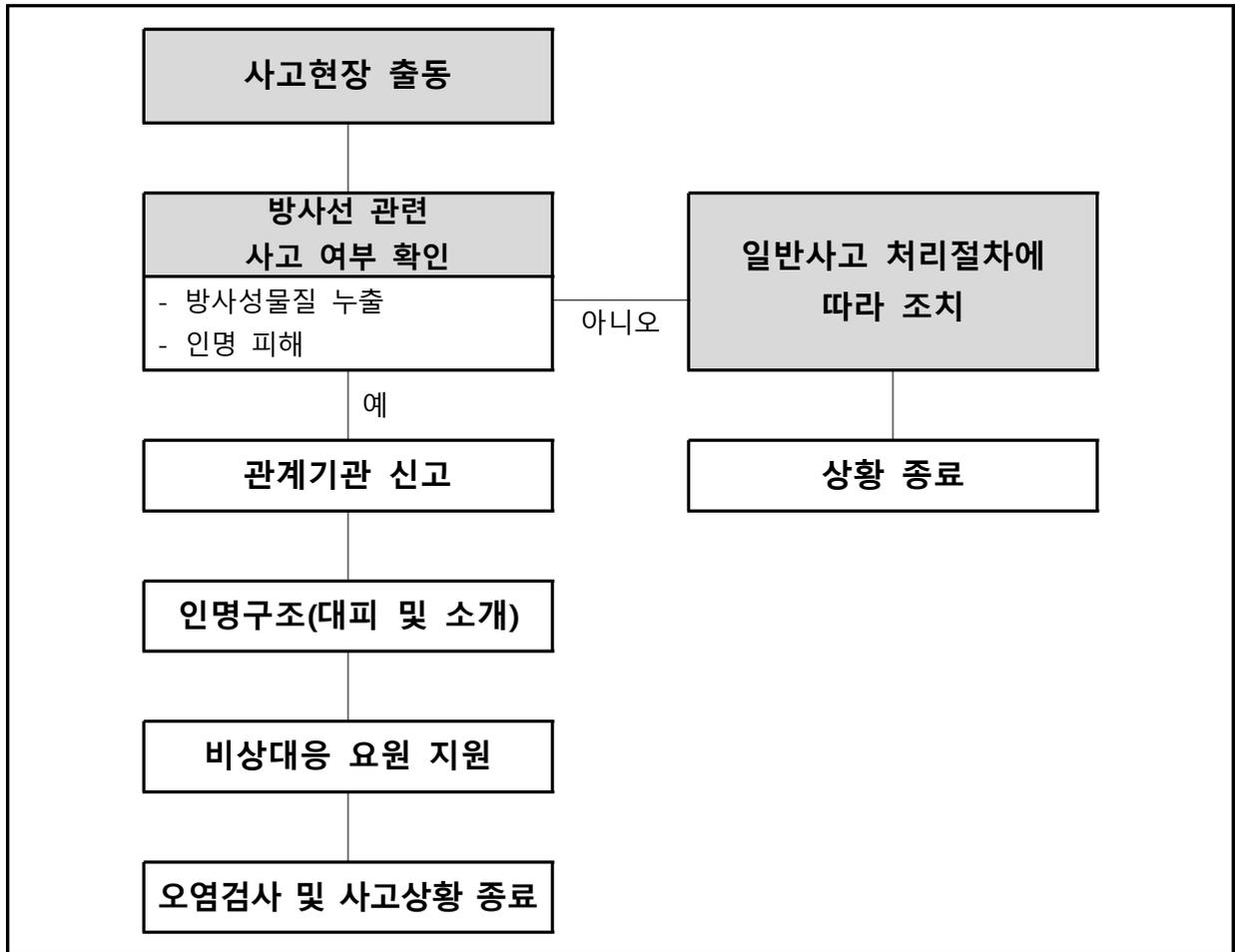
분류		내용	비고
교육	신규	- 직장교육 4시간 실시 - 기본교육 8시간 실시	방사선 작업종사자
	정기	- 직장교육 3시간 실시 - 기본교육 3시간 실시	
	방사선 안전관리자	- 기본교육 3시간 실시 - 매3년 마다 보수교육 12시간 실시	
안전 관리 기록	방사선 관리구역	-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보관하는 방사선차폐 시설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를 제외 출입 제한 -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월 1회 이상 방사선량률 측정 실시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 작성	방사선 안전관리자 및 작업종사자
	계측기 검·교정	- 교정주기(6개월)에 따라 계측기 검·교정 실시	시설지원팀
건강 진단	신규	- 최초 방사선작업 종사 전 - 방사선작업종사 중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방사선 작업종사자
	정기	-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자는 매년 - 방사선작업종사 중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보고	분기보고	-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및 건강검진 결과 - 방사선발생장치 현황	방사선 안전관리자
안전	사고대응	- 관리구역 내 사람이 있는데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방사선방생장치를 긴급정지시키고 피폭 선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자력병 원으로 이송, 피폭선량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수동감시 - 판독특이자 발생 시 과다피폭의 경우 원자력 병원 이송 및 작업 중지, 판독기 훼손, 분실의 경우 대체 선량을 산정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 - 사고발생원인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방지대책 수립 및 피해사항 복구	방사선안전 관리자

○ 추진일정

분류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규교육			→						→				
정기교육(기존)			→						→				예정
방사선량률 측정	→	→	→	→	→	→	→	→	→	→	→	→	
계측기 검·교정		→						→					
건강진단(신규)			→										
건강진단(기존)			→	→	→				→	→	→		예정
각종 분기 보고	→			→			→			→			

○ 방사선 사고 발생시 비상대응 행동요령

- 사고 발생 시 체계도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감염병이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전염병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 예방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염병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②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감염병 관련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감염병 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염병 비상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감염병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㉓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 유행이 종료되어 복구 활동

- 평가 및 보완, 복구, 감시 활동 유지하고 수업결손 현황 보고 및 대책 수립(자체 휴업시)

- 심리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참고 자료 ☞ [공통자료] 교육부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참조

종류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 현 감염병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질병관리청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 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 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 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 **(예방)**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 **(대비)**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 **(대응)**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 **(복구)**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안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미편성 및 긴급 시 예비비 편성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OOO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OOO	053-749-7051	
팀원	총무팀	팀원	OOO	053-749-7052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협조부서
팀원	학생상담센터	팀원	OOO	053-749-7443	
팀원	인권센터	팀원	OOO	053-749-7445	
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원	OOO	053-749-7445	
팀장	전략기획팀	팀장	OOO	053-749-7041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피해	현황	없음	-	-	-
피해자 수	-	-	-	-	-	-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자체조사 결과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법시설의 확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참고 자료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험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법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미편성 및 긴급 시 예비비 편성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1	
팀원	총무팀	팀원	000	053-749-7052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협조부서
팀원	학생상담센터	팀원	000	053-749-7443	
팀원	인권센터	팀원	000	053-749-7445	
팀장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장	000	053-749-7041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교제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	-	-	-	-	-
	성폭력	1	2	-	-	-	0.6
	계	1	2	-	-	-	0.6
피해자 수	성희롱	-	-	-	-	-	-
	성폭력	1	2	-	-	-	0.6
	계	1	2	-	-	-	0.6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자체조사 결과

-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등 고충 처리 전담부서 적극 활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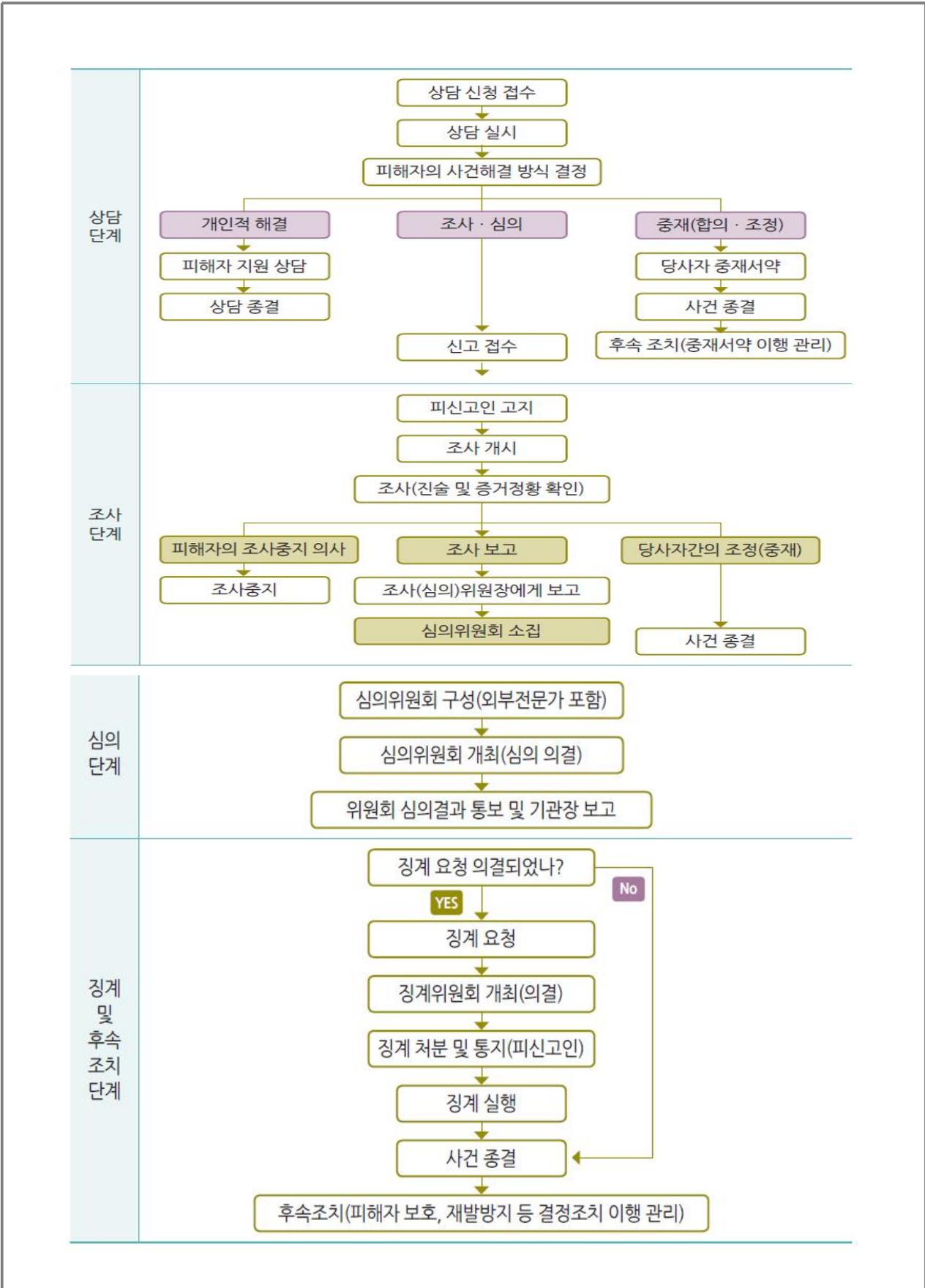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참고 자료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참조

참고 자료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기관명), '21.○.○.(작성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000학교 / 00시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O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O
사건개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폭력예방교육	3.5	4	2	9.5	
인권센터 위원회 회의비	2	3	-	5	
인권센터 사건 자문비	2	2	-	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등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OOO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OOO	053-749-7051	
팀원	총무팀	팀원	OOO	053-749-7052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OOO	053-749-7410	협조부서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팀장	전략기획팀	팀장	OOO	053-749-7041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피해	현황	없음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자체조사 결과**

-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의 확대 및 업무의 다양화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조치 체계 마련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참고 자료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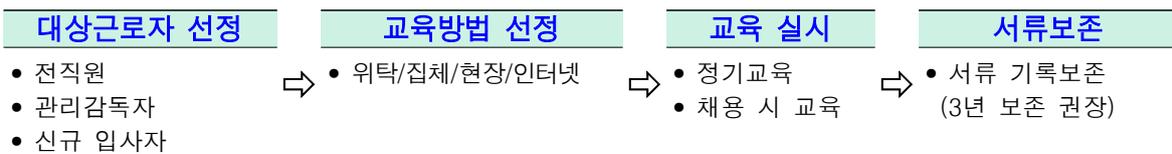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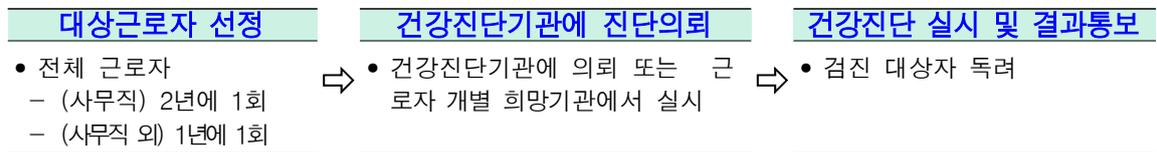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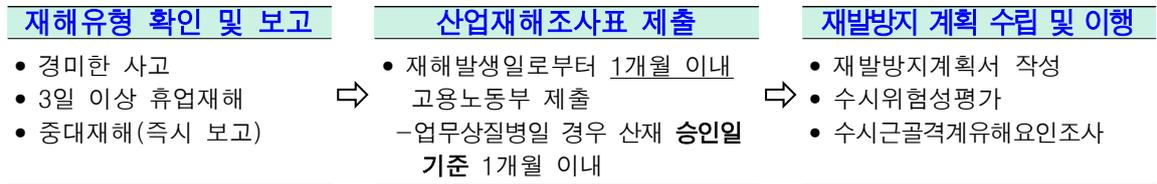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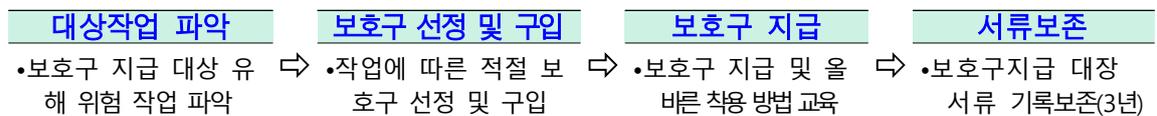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㉓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참고 자료 ☞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주체	주요 업무	
사업주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small>(총장, 특수학교장, 소속기관장)</small>	<p><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1,000명 : 1명, 1,000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5,000명 : 1명, 5,000명 이상 : 2명 이상)
관리감독자	<p><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산업보건의 <small>(현업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small>(현업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small>	<p><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미편성 및 긴급 시 예비비 편성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1	
팀원	총무팀	팀원	000	053-749-7052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협조부서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팀장	전략기획팀	팀장	000	053-749-7041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피해	현황	없음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자체조사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 이후 대학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없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조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관리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 고민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참고 자료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 • 안전보건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간담회(또는 안전관련 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 •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이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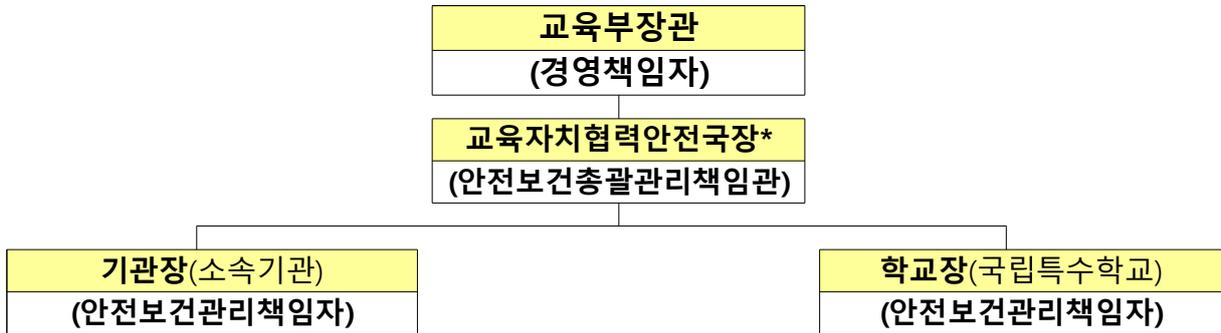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참고 자료 ☞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대상 : 교육부(본부), 소속기관(6기관), 국립특수학교(5교)



* 법적으로 교육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으나 대상기관의 상시근로자 수가 1,443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표 및 총괄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관 (교육자치협력안전 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의 철저 이행, 사전·사후 지원 및 지도 등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지도 ① 소속기관과 국립특수학교의 안전관리체계 구성 이행 여부 점검 확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지원 ③ 직종별 사업장별 위해요인 확인 개선 방법 지도 및 지원 ④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⑤ 도급·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 *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현장에 재해예방 안착 전까지 안전보건 이행상황 수시 점검(현장방문 및 서면 포함 월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학교장, 소속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준수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미편성 및 긴급 시 예비비 편성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4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5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OOO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OOO	053-749-7055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OOO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3	협조부서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OOO	053-749-7031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피해	현황	없음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자체조사 결과

- 전시, 사변,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 및 충무계획 등에 따른 평시·전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미편성 및 긴급 시 예비비 편성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2025-03-21 ~2026-03-21	2	3,431	7,358	5	2,000	-	-	
2025	대학현장실습 생보상공제	2025-06-12 ~2026-03-31	0.4	1,225	560	-	-	-	-	
2026	미정	2026-03-21 ~2027-03-21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 예정

□ 보상한도

-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구분	가입담보	약관 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공제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인)	보통약관	200,000	1,000,000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물)	보통약관	-	10,000	자기부담금 100,000원
	교내치료비	특별약관	1,000		
	교외치료비	특별약관	1,000		
	신입생 OT치료비	특별약관	1,000		
	체육특기생 교내치료비	특별약관	1,000		
	체육특기생 교외치료비	특별약관	1,000		
상해공제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통약관	100,000		대학생
	신입생 OT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통약관	100,000		신입생

- 대학현장실습생 보상공제

구분	가입담보	약관 구분	보상한도액(천원)		자기부담금(원)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공제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인)	보통약관	5,000	5,000	20,000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물)	보통약관	5,000		20,000
	치료비	보통약관	5,000	5,000	0
상해공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통약관	현장실습생		10,000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교육시설 재난공제	2025-01-01 2025-12-31	10,877.8	72,519	13,203	-	-	1	2,240	
2026	교육시설 재난공제	2026-01-01 2026-12-31	15,378.8	72,519	15,552	-	-	-	-	

□ 보상한도

구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교육시설 안전사고)	건물 11개동(대인)	300,000	300,000	
	건물 11개동(대물)	-	1,000,000	
배상책임 (화재)	건물 11개동	150,000(대인)	1,000,000(대물)	
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놀이기구	100,000(대인)	2,500(대물)	
배상책임 (승강기사고)	승강기 14대	80,000(대인)	10,000(대물)	
배상책임 (피공제자 자동차)	교직원 자동차	-	100,000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연구실 안전공제	2024-10-31 2025-10-30	0.9	3,147	2,884	-	-	-	-	
2026	연구실 안전공제	2025-10-31 2026-10-30	0.86	3,153	2,724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유족급여	200,000	
장해급여	200,000	
요양급여	2,000,000	
장의비	10,000	
입원급여	50	
중대한 화상치료	10,000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조직 현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OOO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OOO	053-749-7051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협조부서
팀원	학생상담센터	팀원	OOO	053-749-7443	
팀원	인권센터	팀원	OOO	053-749-7445	
팀장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장	OOO	053-749-7041	

□ 지원 내용

구분	추진 내용
대학 구성원 상담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구성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OOO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OOO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협조부서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OOO	053-749-7031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안전한국훈련	미실시	-	-	
민방위훈련	2025.08.20.	대학 전체	-	비대면 안전교육 실시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대학 전체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안전한국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훈련 계획 없음으로 인해 미실시
민방위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적 공습상황에 대비한 행동요령 숙달
안전점검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작성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안전한국훈련	5월 예정	대학 전체	1,000,000	
민방위훈련	8월, 11월 예정	대학 전체	-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대학 전체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안전한국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응 훈련 수행 ▪ 대학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민방위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응 훈련 수행 ▪ 적 공습상황 혹은 화재상황 등을 가정한 대응요령 교육
안전점검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 ▪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작성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OOO	053-749-7410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협조부서
팀원	학생상담센터	팀원	OOO	053-749-7443	
팀원	인권센터	팀원	OOO	053-749-7445	
팀장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장	OOO	053-749-7055	
팀장	총무팀	팀장	OOO	053-749-7031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2025.05.19.~ 2025.06.20.	재학생	-	비대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2025.05.19.~ 2025.06.20.	재학생	-	비대면(LMS)
폭력예방교육	2025.05.19.~ 2025.06.20.	재학생	-	비대면(LMS)
상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2025.04.03.	기숙사생	-	
하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2025.09.23.	기숙사생	33,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내용 :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한국장애인개발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내용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교육방법 : 교내 LMS 탑재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내용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방법 : 교내 LMS 탑재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상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소화기 사용법 훈련 소방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실시
하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소화기 사용법 훈련 소방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실시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5월 예정	재학생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5월 예정	재학생	-	
폭력예방교육	연 중	재학생	500,000	
상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3월 예정	기숙사생	100,000	
하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9월 예정	기숙사생	100,0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장애인식개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방법 : 온라인 및 대면 교육 실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방법 : 온라인(LMS탑재) 교육 실시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내용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방법 : 온라인(LMS탑재) 및 대면 교육 실시
상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소방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실시 훈련 종료 후 훈련 평가 및 종료회의
하반기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 소방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실시 훈련 종료 후 훈련 평가 및 종료회의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OOO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OOO	053-749-7051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OOO	053-749-7410	협조부서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3	
팀원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팀원	OOO	053-749-7443	
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원	OOO	053-749-7445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OOO	053-749-7031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025.08.27.~ 2025.12.31.	교.직원	361,500	대면, 비대면
4대 폭력예방교육	2025.05.~ 2025.12.	교.직원	-	대면, 비대면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2025.05.~ 2025.12.	고위직	785,940	대면, 비대면
부정청탁 방지 교육	2025.07.~ 2025.12.	교.직원	-	비대면
간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연중	교.직원	-	비대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2025.12.04.~ 2025.12.05.	교.직원	-	대면, 비대면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내용 :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교육방법 : 전문강사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교·직원 및 신규자 교육내용 : 4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고위직대상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고위직(기관장, 보직자, 전임교원) 교육내용 :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 교육방법 : 전문강사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부정청탁 방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교·직원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교·직원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교·직원 교육방법 : 온라인 및 대면 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7~8월 예정	교·직원	400,000	
4대 폭력예방교육	연중	교·직원	1,500,000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5~6월 10~11월 예정	고위직	-	
부정청탁 방지 교육	2월 예정	교·직원	1,400,000	대면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연중	교·직원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연중	교·직원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 교·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 교·직원 ▪ 교육내용 : 4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 및 신종 성범죄, 2차 가해 등
고위직대상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 고위직(총장, 부서장, 전임교원) ▪ 교육내용 :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 및 신종 성범죄, 2차 가해 등
부정청탁 방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초청 대면교육 시행 ▪ 교육대상 : 교·직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 교·직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 교·직원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OOO	053-749-7410	주관부서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OOO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협조부서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OOO	053-749-7031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신규교육훈련	매 학기 초 실시	과학기술분야학과	-	
정기교육훈련	매 학기 초 실시	과학기술분야학과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훈련	안전한국훈련 기간 실시	과학기술분야학과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 안전교육 본부 집체교육 및 학과 자체교육 실시
정기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 안전교육 학과 자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실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실 보호구 착용 및 안내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신규교육훈련	매 학기 초	과학기술분야학과	300,000원	
정기교육훈련	매 학기 초	과학기술분야학과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훈련	안전한국훈련 기간	과학기술분야학과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교육(대면교육)
정기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교육(대면, 비대면 교육)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외 감염병 발생 관련 예방수칙, 관리지침 등 공유 ▪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 부착
감염병 발생 시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발생 시 방역활동
감염병 진료 및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진료 지원 및 감염자 및 구성원 보호
감염병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구성원 대상 감염병 예방수칙, 관리지침 등 교육

6.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OOO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OOO	053-749-7051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OOO	053-749-7091	협조부서
팀원	학생상담센터	팀원	OOO	053-749-7443	
팀원	인권센터	팀원	OOO	053-749-7445	
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원	OOO	053-749-7445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OOO	053-749-7031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폭력예방교육	2025.05.19.~ 2025.06.20.	재학생	-	온라인(LMS)
4대 폭력예방교육	2025.05.~ 2025.12.	교·직원	-	온라인(비대면)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2025.05.~ 2024.12.	고위직	785,940	대면, 비대면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재학생 교육내용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방법 : 교내 LMS에 탑재하여 온라인 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교·직원 및 신규자 교육내용 : 4대 법정 의무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고위직대상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고위직(총장, 보직자, 전임교원) 교육내용 :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방법 : 전문강사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폭력예방교육	연중	재학생	500,000	
4대 폭력예방교육	연중	교·직원	1,500,000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5~6월, 10~11월	고위직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재학생 교육내용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신종성범죄 및 2차 가해 교육 등 교육방법 : 온라인(LMS 해당교육 탑재) 및 대면교육 실시
4대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교·직원 교육내용 : 4대 법정 의무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신종성범죄 및 2차 가해 교육 등) 교육방법 : 온라인 및 대면교육
고위직대상 폭력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상 : 고위직(총장, 부처장, 전임교원) 교육내용 :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신종성범죄 및 2차 가해 교육 등 교육방법 : 전문강사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7.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협조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5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000	053-749-7031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비상대비 민방위훈련	2024.08.22.	대학 전체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 민방위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 적 공습상황에 대비한 대피훈련 및 행동요령 숙달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일정	대상	예산	비고
비상대비훈련	민방위 훈련 기간 중 실시	대학 전체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비상대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비 업무 ▪ 비상상황 시 연락체계 및 대피체계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추가 연락처	
대구소방안전본부	053-780-5272		당직실
수성소방서	053-607-3700		
만촌119안전센터	053-607-3842		
한국전기안전공사	053-288-0300	1855-7500	대구경북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53-719-4101	1544-4500	대구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53-350-2232	053-350-2268	대구본부
수성메트로병원	053-743-7777		지역 병원
경북대학교병원	053-200-5100		지역 병원
바로본병원	053-721-8549		지역 병원
수성구보건소	053-666-3111		지역 보건소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추가 연락처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3-749-7493 본관 상황실	053-749-7413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대구소방안전본부	053-780-5272		당직실
수성소방서	053-607-3700		
만촌119안전센터	053-607-3842		
한국전기안전공사	053-288-0300	1855-7500	대구경북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53-719-4101	1544-4500	대구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53-350-2232	053-350-2268	대구본부
수성메트로병원	053-743-7777		지역 병원
경북대학교병원	053-200-5100		지역 병원
바로본병원	053-721-8549		지역 병원
수성구보건소	053-666-3111		지역 보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52	044-202-4850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300	02-2100-6188	주간 / 야간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3-749-7493 본관 상황실	053-749-7413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보건복지부	044-202-2507		질병정책과
질병관리청	053-550-0631		감염병대응과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3803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73		
대구의료원	053-560-7575		
수성구보건소	053-666-3111		지역 보건소
수성메트로병원	053-743-7777		지역 병원
경북대학교병원	053-200-5100		지역 병원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3-749-7493 본관 상황실	053-749-7413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법무부 스마일센터	053-745-1295		대구센터
대구지방검찰청	1301		
수성경찰서	053-600-6112	182	종합상황실
만촌지구대	053-600-6305		
해바라기센터	053-556-9117		대구센터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3-749-7493 본관 상황실	053-749-7413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대구소방안전본부	053-780-5272		당직실
수성소방서	053-607-3700		
만촌119안전센터	053-607-3842		
한국전기안전공사	053-288-0300	1855-7500	대구경북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53-719-4101	1544-4500	대구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53-350-2232	053-350-2268	대구본부
수성메트로병원	053-743-7777		지역 병원
경북대학교병원	053-200-5100		지역 병원
바로본병원	053-721-8549		지역 병원
수성구보건소	053-666-3111		지역 보건소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3-749-7493 본관 상황실	053-749-7413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국방부	1577-9090		
대구광역시청	053-803-3120		안전정책관
만촌3동 예비군동대	053-751-7113		
교육부	044-203-6191		비상안전담당관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3-749-7493 본관 상황실	053-749-7413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0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000	053-749-7031	
	② 사회재난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0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000	053-749-7031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센터장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000	053-749-7440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0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000	053-749-7031	
		팀장	국제교류원	팀장	000	053-749-7221	
		관장	생활관	관장	000	053-749-7456	
	② 교육시설사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0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000	053-749-7031	
	③ 연구실사고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4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3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0		
3. 감염병 확산	① 감염병재난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주관부서
		팀원	학생장학팀	팀원	000	053-749-7094	
		실장	보건실	실장	000	053-749-7350	
		팀원	보건실	팀원	000	053-749-7095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4. 범 죄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0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000	053-749-7031		
	[1] 일반범죄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주관부서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0		
		팀원	총무팀	팀원	000	053-749-7052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팀원	학생상담센터	팀원	000	053-749-7443		
		팀원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원	000	053-749-7445		
	[2] 성범죄	팀장	전략기획팀	팀장	000	053-749-7041	협조부서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0		
		팀원	총무팀	팀원	000	053-749-7052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팀원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팀원	000	053-749-7443 053-749-7445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팀장	전략기획팀	팀장	000	053-749-7041	주관부서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0	
팀원			총무팀	팀원	000	053-749-7052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3		
[2] 중대재해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협조부서	
		팀장	전략기획팀	팀장	000	053-749-7041		
		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0		
		팀원	총무팀	팀원	000	053-749-7052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6. 기타	[1] 비상사태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3	주관부서	
		팀장	학생장학팀	팀장	000	053-749-7091		
		팀장	시설지원팀	팀장	000	053-749-7410		
		팀원	시설지원팀	팀원	000	053-749-7413		
		팀장	교학지원팀	팀장	000	053-749-7031		
		팀장	행정지원처	처장	000	053-749-7050		
		팀장	총무팀	팀장	000	053-749-7050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1	0	1	0	1	0.6
		재산피해(백만원)	11	0	1.3	0	2.2	2.9
		인명피해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피해	현황	없음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3	1	1	0	5	2
		재산피해(백만원)	2.1	0.2	0.14	0	2	0.88
		인명피해	0	0	0	0	0	0
		부상	3	1	1	0	2	1.4
		계	3	1	1	0	2	1.4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피해	현황	없음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3	0	0	0	0	0.6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0	0	0	0	0	0
		부상	3	0	0	0	0	0.6
		계	3	0	0	0	0	0.6
3. 감염병확산	① 감염병재난	감염자 수	55	268	22	0	0	69
		인명피해(사망)	-	-	0	0	0	0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피해	현황	없음	-	-	-
		피해자 수	-	-	-	-	-	-
	② 성범죄	발생건 수	1	2	-	-	-	0.6
		피해자 수	1	2	-	-	-	0.6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피해	현황	없음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피해	현황	없음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피해	현황	없음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안전 시설물 보수	10	10	10	30
		조경수 유지관리	21	20	13	54
		안전교육 행사 운영비	0.8	1	1	2.8
		계	31.8	31	24	86.8
	② 사회재난	시설물 보수	72	72	72	216
		설비장비 관리	40	40	100	18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1	52.6	31.2	114.8
		소방시설 관리 용역비	18	18	20	56
		계	161	182.6	223.2	740.4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학생안전공제회비	7	7.5	7.5	22
		계	7	7.5	7.5	22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	13	13.2	15.5	41.7
		계	13	13.2	15.5	41.7
	③ 연구실 사고	연구활동종사자 공제가입	3	3	3	9
		연구실 정기점검	4.2	4.2	4.2	12.6
		연구활동종사자 검진	2.4	2.4	1	5.8
		방사선종사자 관리	13.5	14.2	14.2	41.9
		계	23.1	23.8	22.4	1,677.5
	3. 감염병 확산	① 감염병 재난	미편성 및 긴급 시 예비비 편성			
4. 범죄	① 일반범죄	미편성 및 긴급 시 예비비 편성				
	② 성범죄	폭력예방교육	3.5	4	2	9.5
		인권센터 위원회 회의비	2	3	-	5
		인권센터 사건 자문비	2	2	-	4
계	7.25	7.5	9	23.75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미편성 및 긴급 시 예비비 편성				
	② 중대재해	미편성 및 긴급 시 예비비 편성				
6. 기타	① 비상사태	미편성 및 긴급 시 예비비 편성				

[부록]

개인정보 침해 대응 재해·재난 대응 매뉴얼



2025학년도 수성대학교 개인정보 침해 대응 재해·재난 대응 메뉴얼

2025.04.

수 성 대 학 교

목 차

1. 개요	1
1.1 목적	
1.2 법적 근거	
1.3 적용 범위 및 용어 정의	
1.4 단계별 프로세스(업무절차)	
1.5 침해사고 대응 업무수행 체계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방법	6
2.1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조회 절차	
2.2 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민원 대응조치	
2.3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2.4 고객불만 해소조치	
2.5 피해자 구제조치 등	
3. 개인정보 침해사고 원인별 보호 조치	11
3.1 해킹	
3.2 내부자 유출	
3.3 이메일 오발송	
3.4 외부 노출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13
4.1 침해사고 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 계획 수립·이행	
4.2 재발방지 교육 및 사례 전파	
붙임	14

1 개요

1.1 목적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은 교육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지침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근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1.2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1.3 적용 범위 및 용어 정의

- 해킹,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내·외부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적용된다.

- 단 1건만 유출되어도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 교육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유출된 정보(예: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가 암호화되어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함

용 어	정 의
침해(유출)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0-1호) 제25조
침해사고	•비인가 된 접근, 정보시스템의 오남용, 비인가 된 시스템 사용 또는 사용자의 계정 도용, 악성코드 유입 및 실행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침해사고 대응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의 분석, 처리지원, 사후 복구, 사후 예방조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를 말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임명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본 절차에 따라 대응토록 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업무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함
분야별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의 지정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함

가이드

개인정보 침해(유출)의 개념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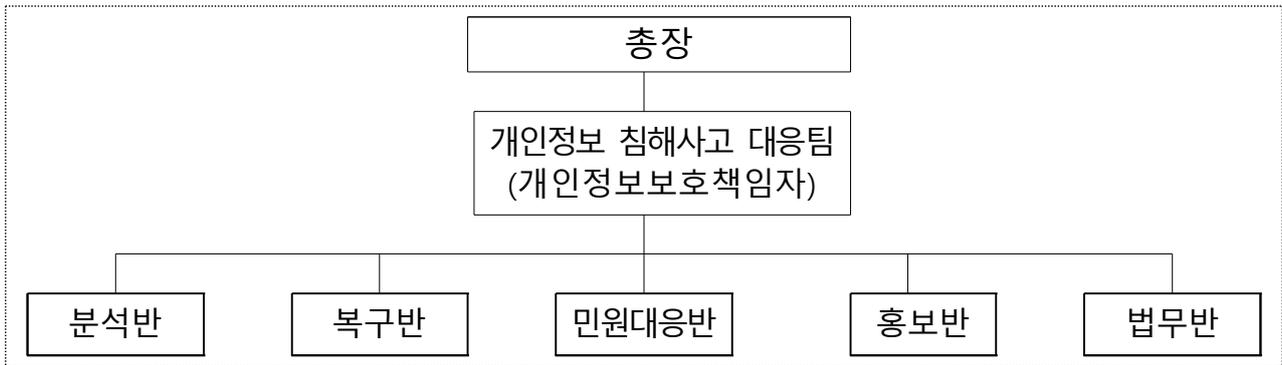
1.4 단계별 프로세스(업무 절차)

○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형태에 따라 조직체계, 업무분장, 비상연락체계가 상이하므로 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다음 예시가 의무사항은 아님)

단계	상세 업무	비고
사고인지 및 긴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접수 및 사고인지 ○ 침해사고 대응센터 소집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인 ○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 수행 ※ 침해된 개인정보 삭제조치 및 기술지원 요청 	
↓		
정보주체 침해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실 통지(5일 이내) 	세부내용 2.1 참고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교육부(privacy.moe.go.kr)에 침해사고 신고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교육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privacy.go.kr)에 침해사고 신고 	세부내용 2.2 참고
↓		
민원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침해사고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민원대응반 구성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 대응 및 불안 해소 조치 	세부내용 2.4~2.5 참고
↓		
피해구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안내 	세부내용 2.6 참고
↓		
보안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원인 분석 및 보안 강화·기능 개선 	
↓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및 이사회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 전파 교육 및 개선 대책 시행 	

1.5 침해사고 대응 업무수행 체계

○ 조직체계



○ 업무분장

조직	담당 업무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사고 대응 관련 방향성 제시 등 의사 결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사고 대응 총괄 지휘 및 침해사고 대응 팀 구성·운영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사고 인지, 접수, 전파 침해사고 대응 절차 수립 정보주체에게 침해 사실 통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문기관)에 침해사고 신고
분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사고 사실 확인, 조사 및 원인 분석 사고내용 세부조사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요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사고 처리 지원 시스템 복구 및 백업(유지보수/협력업체 포함)
민원대응반 (온라인,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통지문 안내에 따른 후속업무(민원 등) 진행 상담센터,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필요시 유관부서와 협조)
홍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사고 관련 대외기관(언론사 등) 대응 침해사고 안내문 문구 최종 검토
법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상 대응방안, 의사결정 사항 등 정책적 판단사항 검토 및 결정 침해사고 관련 수사기관 경과사항 대응 및 대책반 공유

○ 비상연락망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

조직별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OOO 행정지원처장	053-749-7050	
총괄대응본부	OOO 행정지원처장	053-749-7050	
분석반	○ ○ 팀장	053-749-7080	
복구반	○ ○ 팀장	053-749-7080	
민원대응반	OOO 팀장	053-749-7031	
홍보반	OOO 팀장	053-749-7025	
법무반	OOO 팀장	053-749-7041	

- 협력업체/유지보수업체

업체명	담당 시스템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주)프O텍	통합유지보수	OOO 부장	010-****-****	
디O씽O	DB유지보수	OOO 차장	010-****-****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방법

2.1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조회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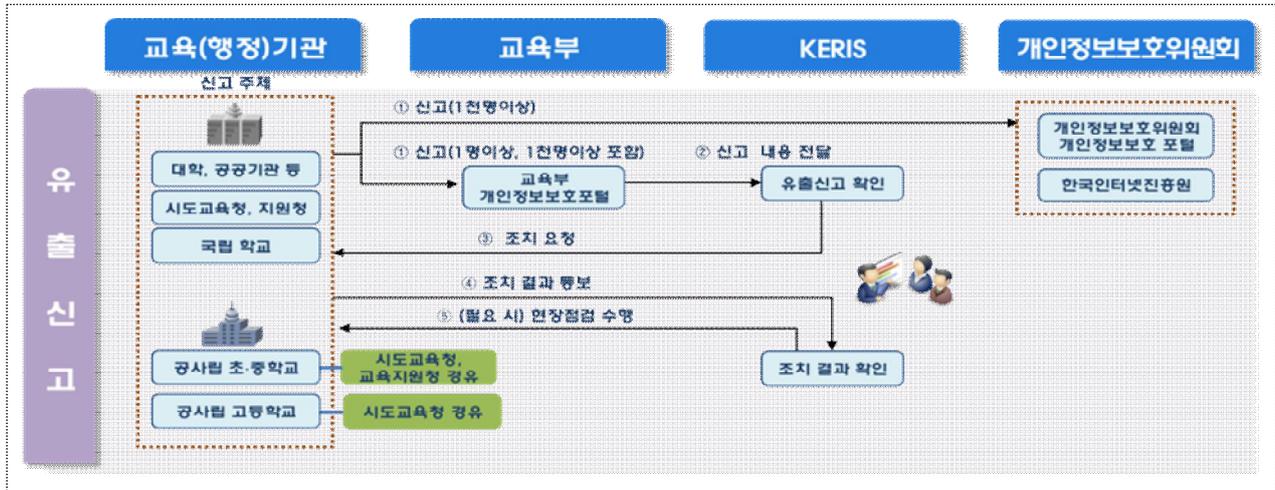
가이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
-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당국에 대한 신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1차적인 침해 신고 및 통지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침해사고 발생 시 수탁자와의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

- 총괄대응본부는 침해사고 인원 등을 확인하여 [붙임 1] 침해 통지 방법에 따라 [붙임 2] 표준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 문항 (예시)을 참고하여 정보주체들에게 침해 사고 통지
 - 통지 항목 : ①침해사고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침해사고 시점과 그 경위, ③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④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⑤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수탁사업자가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도록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시점에서 지체 없이 침해사고 통지
- 1천명 이상 유출 시에는 홈페이지에 필수 침해사고 통지 5개 항목을 7일 이상 공지하고, 정보주체가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https://www.sc.ac.kr>) 제공
 - 개인정보 침해사고 결과는 전체 공지가 아닌 아이핀(I-PIN),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개별 본인 확인 후 침해사고 결과 조회 지원

2.1.2 침해사고 신고 절차 및 방법

○ 침해(유출)사고 신고 절차



○ 침해사고 신고 방법

구분	내용
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교육부에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1명 이상 유출된 경우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부에 보고 ※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직속기관 등은 교육청, 교육부에 보고 ※ 국립학교, 대학, 교육청, 공공기관 등은 교육부에 보고
신고시기	▶ 5일 이내(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 신고)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privacy.moe.go.kr)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홈페이지를 통해 침해 사고 보고 및 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경우 전자우편, 팩스 공문 등을 통해 침해사고 보고 및 신고서 제출 ▶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급기관과 교육부에 동시에 보고하며 침해사고 신고서를 제출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통지여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규모, 침해사고 시점·경위, 침해사고 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에 대한 침해사고 통지 결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결과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
신고양식	▶ [붙임 3]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서 (양식)

2.2 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민원 대응 조치

가이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

- 대학 민원 창구 확대: 인원 폭증 대비 임시 창구 설치
- 인터넷 회선 증설: 온라인 상담신청 서비스 안정화
- 콜센터 인력 증원: 대기시간 최소화

2.3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가이드

○ 물리적으로 개인정보가 소실되거나 운영 중인 개인정보가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

- 총괄대응본부는 본관 2층 회의실에 오프라인 창구를 개설
 - 전화, 메일, 홈페이지, SNS 등 한 가지 이상의 채널을 선택하여 단일화된 민원대응 창구를 구축

구분	채널	상세 내용
오프라인	본관 2층 회의실	
온라인	전화	053-749-(별도 내선 편성)

- 복구반은 침해사고 된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하고 별도의 임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관의 업무 혼잡 방지
- 분석반은 대외 수사 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 전담 인력 구성 및 대응
- 시스템 오류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한 정보주체의 민원 발생 시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

2.4 고객불만 해소 조치

가이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침해사고 된 개인정보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

- 수성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c.ac.kr>)에 침해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사항 공지(1일 1회 업데이트)
-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유출 시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 통지 시 함께 안내
 - ※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차단신청 기능 (voice.anti-phishing.or.kr, sms.anti-phishing.or.kr)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개인정보 침해 항목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구분	세부 안내 사항
아이디, 비밀번호 유출	- 비밀번호 변경 안내
카드번호 유출	- 카드 재발급 절차 안내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	-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 안내

- (정보주체 요청이 있을 시) 회원 탈퇴 방법 안내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조치

2.5 피해자 구제 조치

가이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
-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

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

3 개인정보 침해사고 원인별 보호 조치

3.1 해킹

-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추가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침해된 시스템 분리·차단 조치, 관련 로그 등 증거자료 확보, 침해 원인 분석,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변경* 등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시스템 변경, 기술지원 의뢰 및 복구 등과 같은 긴급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 일방향 암호화되지 않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거나, 해커 등이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도 비밀번호 변경을 유도하여 추가 피해 예방 방지
 - 사고원인 조사 등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개인정보 침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즉시 제거하고, 미비한 보호조치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개선 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

3.2 내부자 유출

- 개인정보 유출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이력 및 개인정보 열람·다운로드 등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접속 경로 등을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접속인 경우 접속경로를 확인하여 차단하여야 함
 - * 비인가된 개인정보 처리,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정정·다운로드·삭제·출력 등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계정, 접속권한, 접속기록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유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에 활용된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와 매체(USB, 이메일, 출력물 등)를 회수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등과 협조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3.3 이메일 오발송

- 이메일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 수신자에게 오발송 메일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함
 - * 삭제 요청시 가능한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를 같이 요청(예: 삭제전 목록화면과 삭제후 목록화면을 받음)
- 메일서버 외 첨부파일서버(대용량 메일 등)를 이용하는 경우 첨부파일서버 운영자에게 관련 파일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함

3.4 외부 노출

- (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노출의 경우) 노출된 사업자의 웹페이지 삭제를 검토하고,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로봇배제 규칙*을 적용하여 외부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 * 홈페이지 공개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봇배제 적용 필요
-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노출된 경우) 관리자의 접속 IP를 제한하고,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자 인증 절차를 추가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의 경우) 게시글 및 첨부파일 내 개인정보 노출 부분을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게시하여야 함
- (상용 오피스 취약점으로 노출된 경우) S/W버전은 항상 최신버전*으로 이용하며 홈페이지 첨부파일 탑재 시 엑셀 문서는 PDF 등으로 변환**하여 탑재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4.1 침해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 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 침해 원인별 긴급 보호조치를 취한 이후 보완대책 점검 및 보완 실시
- 중장기 보완대책을 위해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이행 실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 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할 때 같이 점검 실시 권고

4.2 재발방지 교육 및 사례 전파

- 기관내 구성원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부서내 모든 취급자는 필수적으로 재발방지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를 내부공지 등을 통해 기관내 구성원에게 사례를 전파*
 - 사례 전파의 구성(예시)

구분	구성 내용
사고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년 0월 0일 개인정보 취급자가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판에 탑재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엑셀)을 00으로부터 0년 0월 0일 인지하여 해당파일 삭제 조치함 • 개인정보 00건,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은 00을 포함한 총 00개가 유출됨
사고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에게 침해통지를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탑재하여 전파 • 피해 구제 방안 등 정보주체 민원 대응반 구축 • 재발방지대책(교육 등)을 수립
기관 보완 조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웹 필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정보 파일 검출 • 기관 개인정보 체계 강화를 위한 홍보자료 및 사례 전파 실시
향후 기관의 보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등 개인정보 체계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매년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 교육 실시
관련 변경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관리 계획 수립 시 개인정보 침해 재발방지 계획 포함

붙임1 침해사고 통지 방법

침해사고 통지 방법

구분	내용
통지대상	▶ 정보주체
통지방법	▶ 서면, 전자우편, FAX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위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공개 가능 - 단, 통지 및 조치 후에도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통지내용을 게재
통지내용	▶ 침해된 개인정보의 항목 ▶ 침해된 시점과 그 경위 ▶ 침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지시기	▶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통지연기	▶ 개인정보 유출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기 가능 -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폐쇄 조치 -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조치 - 향후 수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보존 조치 - 정보주체에게 침해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침해확인 웹페이지 제작 등의 통지방법 마련 조치 - 기타 개인정보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각 항목의 조치를 취한 이후,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항목의 사실만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음 - 정보주체에게 침해가 발생한 사실 - '통지내용' 중 확인된 사항

붙임2

표준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 문안(예시)

- 부가설명 란에 필수사항은 < >, 참고사항은 ()로 표기하였음
- 필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통지문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추후 확인되면 반드시 추가 통지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침해 상황에 적합하게 내용을 변경하여 활용

표준 통지문안 예시	부가 설명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 제목 > - ‘침해사고 통지’문구 포함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문) - 침해사고 통지 사실 알림 - 사과문을 먼저 표현
귀하의 개인정보는 20○○년 ○월 ○일 000시스템 장애처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유지보수업체로 전달되었고, 유지보수업체는 자체 서버에 저장·보관하다가 안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해 20○○년 ○월경 해커에 의한 해킹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확한 일시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되면 추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해된 시점과 경위> - 침해된 시점과 경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 - ‘귀하’, ‘고객님’ 등으로 침해된 정보 주체 명시 ※ 부적합한 표현 : 일부 고객, 회원 정보의 일부 등 - 추가 확인된 사항은 반드시 추가로 통지
침해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아이디(ID), 비밀번호(P/W), 이메일, 연락처로 총 6개입니다.	<침해된 항목> - 침해된 항목을 누락 없이 모두 나열 ※ ‘등’으로 생략하거나, ‘회사 전화번호’ 및 ‘집 전화번호’를 합쳐서 ‘전화번호’로 표시 안됨
침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해당 IP와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업체 서버에 있던 귀하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 접속경로 차단 등 예시된 항목 외에도 망 분리, 방화벽, 개인정보 암호화, 인증 등 접근통제,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한 내용 설명

붙임3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서(양식)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서(양식)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침해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침해된 시점과 그 경위					
침해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침해사고 신고 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서(작성 사례)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일자: ▪ 통지방법: ▪ 통지대상: 				
침해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규모: - 교육부 신고여부(○), 개인정보위 신고여부(○), 홈페이지 공개여부(○) ▪ 침해항목: 				
침해된 시점과 그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인지경로 - ▪ 침해 시점 및 경위 - 				
침해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최소화 방법 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여부 조회(학교 홈페이지 등) ② 침해사고 발생 후 홈페이지 로그인시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비밀번호 변경 ▪ 사고발생 후 조치사항 ① 기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메뉴얼에 따라 침해사고 대응반 구축 ② 개인정보 침해 접수 창구 및 민원 대응 창구 구축 ③ 침해 항목 및 발생 상황 인지 후 침해사고 통지문 작성 및 관련 내용 통지, 교육부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④ 침해 원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체계 강화 ⑤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보안강화 계획(안) 수립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차 피해 접수를 위한 피해 접수 담당 창구 운영 ② 개인정보 침해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창구 안내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종화	행정지원터	처장	053-749-7050
	개인정보 취급자	장철	ABC융합교 육센터	팀장	053-749-7080

침해사고 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붙임4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치확인서(양식)**

개인정보 침해신고 조치확인서(양식)

※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관명													
정보주체 통지 여부	통지일자												
	통지방법	(예시) 전화, 이메일, 서면, 팩스 등											
	필수통지 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color: red;">필수 통지 항목 5가지</th> <th>포함 여부 확인(O, X)</th> </tr> </thead> <tbody> <tr> <td>① 침해된 개인정보의 항목</td> <td>○ 또는 X</td> </tr> <tr> <td>② 침해 시점과 및 그 경위</td> <td>○ 또는 X</td> </tr> <tr> <td>③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td> <td>○ 또는 X</td> </tr> <tr> <td>④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td> <td>○ 또는 X</td> </tr> <tr> <td>⑤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td> <td>○ 또는 X</td> </tr> </tbody> </table> <p>(예시) 이메일 내용 이미지 캡처 등 증빙자료 포함</p>	필수 통지 항목 5가지	포함 여부 확인(O, X)	① 침해된 개인정보의 항목	○ 또는 X	② 침해 시점과 및 그 경위	○ 또는 X	③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 또는 X	④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또는 X	⑤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필수 통지 항목 5가지	포함 여부 확인(O, X)												
① 침해된 개인정보의 항목	○ 또는 X												
② 침해 시점과 및 그 경위	○ 또는 X												
③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 또는 X												
④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또는 X												
⑤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또는 X												
발생(인지) 일자													
발생(인지) 경로													
조치 일자													

침해사실 인지 이후 후속 조치 (침해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개인정보 침해 시 아래 사항 준수 1.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구비 ※ 법령에 기반하여 최신화 되어있는지 확인 및 개선, 침해 시 매뉴얼대로 즉시 신고 등 대응 2. 침해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이행 3.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직원 교육 실시, 특히 신규 직원은 업무 투입 전 개인정보보호 기본 교육 실시 후 투입 4. 그 밖의 개인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고 일자	
침해된 개인정보	규모(명)		
	항목		
침해된 시점과 그 경위			
교육부 신고 여부 (1명 이상 침해시)		○ 또는 X	(1명 이상인 경우) 침해 통지 및 조치 결과를

<p>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 (1천명 이상 침해시)</p>	<p>○ 또는 X</p>	<p>지체 없이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 고(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moe.go.kr))</p>
<p>홈페이지 공지 여부 및 공지 기간 (1천명 이상 유출)</p>	<p>(</p>	<p>(1천명 이상인 경우)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상급기관을 경유 하여 교육부에 보고하고(교 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 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한 국 인 터 넷 진 흥 원 , www.privacy.go.kr)에 신고</p> <p>※1천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별 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p>
<p>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p>	<p>피해구제절차 안내 등</p>	
<p>진행사항 또는 향후계획</p>	<p>자체 내부 감사 수행, 상위기관 현장 컨설팅 수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예정 등</p>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조치 확인서(작성 사례)

※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관명																			
정보주체 통지 여부	통지일자																		
	통지방법	이메일 및 유선 전화																	
	필수통지 항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필수 통지 항목 5가지</th> <th>포함 여부 확인(O, X)</th> </tr> </thead> <tbody> <tr> <td>① 침해된 개인정보의 항목</td> <td></td> <td>○</td> </tr> <tr> <td>② 침해 시점과 및 그 경위</td> <td></td> <td>○</td> </tr> <tr> <td>③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td> <td></td> <td>○</td> </tr> <tr> <td>④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td> <td></td> <td>○</td> </tr> <tr> <td>⑤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필수 통지 항목 5가지		포함 여부 확인(O, X)	① 침해된 개인정보의 항목		○	② 침해 시점과 및 그 경위		○	③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	④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⑤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필수 통지 항목 5가지		포함 여부 확인(O, X)																	
① 침해된 개인정보의 항목		○																	
② 침해 시점과 및 그 경위		○																	
③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방법		○																	
④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																	
⑤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발생(인지) 일자																			
발생(인지) 경로																			
조치 일자																			
침해사실 인지 이후 후속 조치 (침해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신고 일자			
침해된 개인정보	규모(명)		
	항목		
침해된 시점과 그 경위			
교육부 신고 여부 (1명 이상 유출시)		<p>(1명 이상인 경우) 침해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moe.go.kr))</p> <p>(1천명 이상인 경우)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하고(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www.privacy.go.kr)에 신고</p> <p>※1천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별 통지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 (1천명 이상 유출시)			
홈페이지 공지 여부 및 공지 기간 (1천명 이상 유출시)	<p>-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p>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p>▪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최소화 방법</p> <p>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대학 홈페이지 등)</p> <p>② 침해사고 발생 후 홈페이지 로그인시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비밀번호 변경</p> <p>▪ 피해자 구제절차</p> <p>① 2차 피해 접수를 위한 피해 접수 담당 창구 운영</p> <p>② 개인정보 침해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창구 안내</p>		

<p>진행사항 또는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정보 파일 운영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DLP, DRM 등) ② 용역업체(유지보수 등)가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계정 생성 ③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 ④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사항 확인 및 관련 내용 점검
-------------------------	--

붙임5 침해(유출)사고 대응 흐름도



붙임6

개인정보 침해(유출)에 따른 2차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

	피해종류	활용된 개인정보 주요항목	개인정보 악용 절차	이용자 대응요령
	온라인 사기쇼핑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① 카드번호, 유효기간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국내외 홈쇼핑 사이트에 접속 ② 홈쇼핑 홈페이지, ARS를 통한 온라인 사기 결제·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정지 및 재발급 신청 ※ 신고기관 : 각 카드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 등
금전적	명의로용을 통한 통신서비스 가입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① 침해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 가입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절차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위조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 수반이 예상됨 ② 불법 가입한 전화번호로 스팸을 발송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함 ※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서비스 이용제한을 당하거나 명의로용 소명절차를 밟는 등 피해를 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로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한 불법 통신서비스 신규가입 여부 확인 ※ 신고기관 : 통신민원조정센터(msafer.or.kr) ※ 명의로용방지서비스(M-Safer) :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시 이메일·문자로 가입여부 통보
	명의로용을 통한 신용카드 복제	이름,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① 침해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불법 복제 ※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이름 등으로 복제 가능 ② 불법 복제된 카드를 국내외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정지 및 재발급 신청, 이용내역 통지 서비스 가입 ※ 신고기관 : 각 카드사, 경찰, 금융감독원(☎1332)

	피해종류	활용된 개인정보 주요항목	개인정보 악용 절차	이용자 대응요령
			<p>활용하여 상품 결제 등에 악용</p> <p>※ 국내외 POS단말기의 경우 마그네틱 부분만을 이용하여 결제 가능</p>	
	스미싱	휴대전화번호	<p>① '정보침해 확인 안내'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인터넷주소)를 삽입하여 발송</p> <p>② 금융기관 사칭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금융정보 탈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한 문자메시지 삭제 및 메시지 상 링크 클릭하지 않기 또는 카드사 공지 전화번호 확인 ※ 신고기관 : 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비금전적	보이스피싱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 집전화번호, 집주소 등	<p>① 경찰, 금융감독당국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p> <p>② 금융관련 업무 목적 사칭을 통한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p> <p>③ 유출된 금융사를 사칭,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빙자하여 ARS를 통해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한 전화 거부 및 각 카드사에서 공지한 전화번호 확인 ※ 신고기관 : 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명의도용을 통한 온라인회원 가입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	<p>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가입</p> <p>※ 일부 홈페이지의 경우 이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활용한 해당 사이트 탈퇴 요청 ※ 신고기관 :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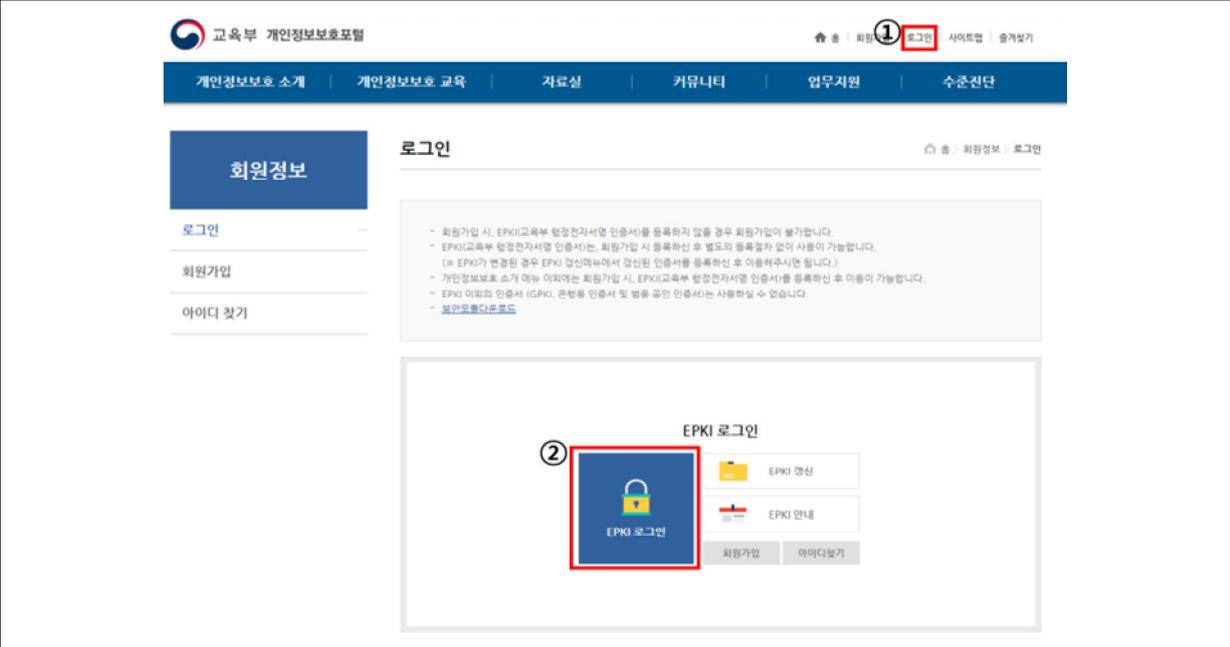
	피해종류	활용된 개인정보 주요항목	개인정보 악용 절차	이용자 대응요령
			<p>이메일, 연락처만으로 회원가입 가능</p> <p>② 명의도용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수십여개의 웹사이트 가입하여 개인정보 불법 이용</p>	<p>※ 국내 사이트로 주민번호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주민번호 미사용시 서비스 불가</p>
	휴대전화/이메일 스팸발송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p>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발송</p> <p>※ 유출된 모든 휴대전화, 이메일로 도박 등 스팸 무작위 발송 가능</p> <p>※ 신용정보, 연소득 등 활용 대출 스팸 발송, 자동차 보유여부를 활용한 보험 스팸 발송 등 특정유형의 개인에 대한 타겟 마케팅 가능</p> <p>② 휴대전화,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는 원치 않는 홍보·마케팅 광고 수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차단, 수신 스팸 적극 신고 ※ 신고기관 : 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 : 발신·회신번호 등 발송패턴을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악성코드 유포메일 발송	이메일주소 등	<p>① 해커가 특정 대상을 목표로 스팸/피싱 시도용 첨부파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결을 유도 URL이 포함된 이메일 발송</p> <p>② 수신자들이 이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 및 URL을 클릭</p> <p>③ 해커가 수신자의 PC를 장악하여 기밀 및 개인정보를 빼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가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함부로 열람하지 않고 바로 삭제 • 사용자 PC의 바이러스 백신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 및 정기적 검사 수행 ※ 신고기관 :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붙임7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침해사고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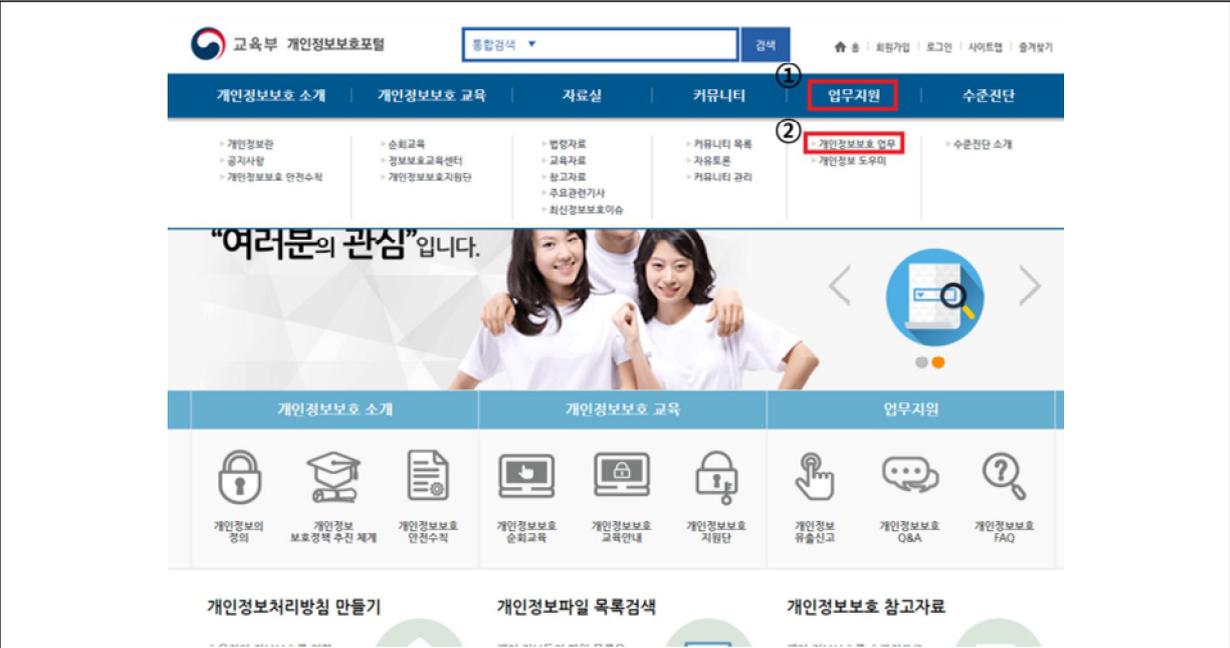
[1단계]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 사이트 접속

→ ① [로그인] → ② [EPKI 로그인] 선택

※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메뉴를 통하여 회원가입 진행



[2단계] ① [업무지원] → ② [개인정보보호 업무] 선택



[3단계] ①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선택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

개인정보보호 소개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자료실 | 커뮤니티 | 업무지원 | 수준진단

업무지원

개인정보보호 업무

개인정보 유출신고 안내 | 개인정보 유출신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안내

네트워크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이 용이해진 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기업·국가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뜻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개인정보의 유출), 제53조(개인정보 유출신고)

• 개인정보 유출 1건 이상 발생 시 교육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유출건수가 1천건 이상인 경우 교육부로 신고 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의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자체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 유출신고

교육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시스템 관련 문의 | 053-714-0574 | Copyright © 2016 KERIS. All rights reserved.

[4단계] ① [침해사고 신고 관련 내용 작성] → ② [신고접수] 완료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

개인정보보호 소개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자료실 | 커뮤니티 | 업무지원 | 수준진단

업무지원

개인정보보호 업무

개인정보 유출신고 | 개인정보보호 Q&A | 개인정보보호 FAQ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업무사항-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자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3호에 근거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게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해당 유출신고 접수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①

필수 (*)가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해 주십시오.

• 신고기관	<input type="text"/>				
• 신고일	성명	<input type="text"/>			
	연락처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input type="text"/>				
• 유출된 시간과 경위	<input type="text"/>				
• 유출된 데에 최소한 대책 조치 및 결과	<input type="text"/>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완화 방법 및 구제요지	<input type="text"/>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input type="text"/>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input type="text"/>				

② 신고접수

교육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시스템 관련 문의 | 053-714-0574 | Copyright © 2016 KERIS. All rights reserved.

붙임8 유관기관 관련 연락처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기 관 명	전화번호	인터넷사이트
교육부	-	https://privacy.moe.go.kr/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https://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

관련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전화번호	인터넷사이트
대검찰청	1301	https://www.spo.go.kr/
경찰청	182	https://ecrm.cyber.go.kr